

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12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어려운 농촌출신학생의 학비 경감과 면학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청람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청람재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운영위탁
- 청람재의 위치(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-6번지)를 명시
- 학사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의 출연과 보조범위를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까지로 확대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 (사무의 위임 등)
- 지방자치법 제135조 (공공시설)

조례(안) : 붙임

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충청북도 학사" 를 "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청람재"로 한다.

제2조중 "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번지"에 두고
"청람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-6번지"에 둔다
한다

제5조중 "도지사"를 "도지사 및 시장군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